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이봉준 의원 외 25명

나. 의안번호 : 제2541호

다. 발의일자 : 2025년 3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 2. 제 안 이 유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 심의위원회는 동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 도시숲등 조성·관리 사업으로 산림 및 수목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는 제1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②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 ③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제3호는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계  | 내부위원<br>(당연직) | 외부위원(위촉직)  |         |           |            |
|----|---------------|------------|---------|-----------|------------|
|    |               | ① 도시숲등 전문가 | ② 주민 대표 | ③ 시민단체 추천 | ④ 기타(언론 등) |
| 15 | 2             | 8          | 2       | 2         | 1          |

※내부위원: 정원도시국장, 자연생태과장 ※위원(외부)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24.4.3.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국유림이 포함된 남산공원, 북악산 탐방로,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설치 시 다수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견 없음.